

[사 건 명] 행심 2018 - 7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1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0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16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8. 9. 12. ■■■■ 1학년 □□□의 전 여자 친구였던 ☆☆☆ 3학년 피해학생(○○○)은 친구 ♡♡♡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

나. ♡♡♡은 □□□에게 이 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하였고, □□□은 캡처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 □□□의 친구들이 이 게시물에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 ㅋㅋㅋ 등의 댓글을 남겼고, 청구인도 ‘와’, ‘ㅋㅋㅋㅋ’, ‘에바야 ㅋㅋ’ 라고 댓글을 남겼으며, 댓글을 남긴 학생 수는 약 30명에 이른다.

라. 2018. 9. 12. 오후 8시30분 경, 피해학생은 아파트 21층에서 투신자살 하였다.

마. 2018. 10. 8.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사안을 접수 받고 2018. 10.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바. 2018.11.05. 청구인에게 『특별교육 이수 16시간 등』 처분 조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 시, 의견 진술내용과 소명자료 제출 등 전혀 언급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제출한 자료 및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 가해 학생 댓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을 내렸다.

나. 이 사안의 댓글 작성 등 단순가담은 인정하나, 평소 피해학생이 모범 학생인줄 알았으나 피해학생의 남자 친구 및 동성 친구들 간 대화 내용이 너무 불량한 것에 대해 실망하여,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 표현인 ‘와’, ‘ㅋㅋㅋㅋ’, ‘에바야 ㅋㅋ’ 라는 댓글을 달은 것이며, 가해학생의 선도가 목적인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적으로 죄를 가중시킨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의 목적에 배치되므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측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과하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학생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부모 요청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사과하지 못한 것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고, △△△ 및 ▲▲▲ 학생의 서면사과 처분과 비교할 때에도 청구인의 처분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가혹하고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댓글 뿐 아니라 약 30명의 학생들의 댓글을 모두 첨부하여 심의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출석 요구 서류에 함께 동봉된 서면진술(의견)서는 자치위원회 불참 시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 보호자와 자녀는 가해사실에 대해 변론할 내용이나 요구사항, 기타 의견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위원인, 피해학생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동성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원문 글 내용이 가해학생들에게 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므로 일방적인 사이버 폭력이다.

다.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칭하여 성적희롱발언, 욕설 등의 댓글을 남기는 와중에 청구인이 ‘와’, ‘ㅋㅋㅋㅋ’, ‘에바야 ㅋㅋ’ 라는 단순한 댓글을 남겼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조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투신자살을 하였고 단순한 말들의 댓글도 피해학생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도·교육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조치를 결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피해학생 측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피해학생 측에서는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판단요소 중 화해정도가 없음으로 봐도 무방하다.

마. 타 학교 학생들이 청구인과 비슷하게 사소한 댓글들을 남겨 서면사과 처분 등을 받은 것은 각 학교 자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의 부모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9. 12. ■■■■ 1학년 □□□의 전 여자 친구였던 ☆☆☆ 3학년 피해 학생(○○○)은 친구 ♡♡♡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였고, 위 ♡♡♡은 위 □□□에게 위 페이스북 메시지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하였으며, 위 □□□은 캡처본을 자신의 페이

스북에 게시하였는데, □□□의 30여명 친구들이 위 게시물에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 ㅋㅋㅋ 등의 댓글을 남긴 상황속에서, 청구인도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에바야 ㅋㅋㅋ’ 등 5번 정도의 호응하는 댓글을 남겼고, 이에 모멸(모욕)감을 느낀 피해학생은 같은 날 20시30분경 아파트 21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의 30여명 친구들이 □□□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피해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 ㅋㅋㅋ 등의 댓글을 남긴 상황속에서, 청구인도 이에 호응하는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에바야 ㅋㅋㅋ’ 등 5번 정도의 댓글을 남겼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댓글 작성행위는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모멸(모욕)감을 느끼도록 하였

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친구들의 댓글 내용에 호응하는 단순한 감정표현의 댓글을 달았을 뿐 적극적으로 모욕 및 비하 발언 등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점이 우려되며, 더불어 특별교육을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별교육 부과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